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283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박재상

피 고 B(개명 전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철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36,522원 및 그 중 47,438,353원에 대하여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 14. 원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이자 연 6.5%, 지연이자 연 13.5%, 변제기를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D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7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정근보증'이라 한다)¹⁾.

나. D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1. 10.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남은 원금은 47,438,353원, 미지급 이자는 224,098,1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범위 내인 271,536,522원(= 남은 원금 47,438,353원 + 미지급 이자는 224,098,169원) 및 그 중 47,438,35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16. 5. 14.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 11. 1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16. 5.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1.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D 소유의 건물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3,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② D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D 소유의 건물들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③ 위 D 소유의 건물들에 대한 배당표는 2017. 1. 18.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7. 1. 18.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1. 18. 완성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보호법에 의한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한정근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한정근보증 이후에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증인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대표이사 지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은 원고와 D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인데, 피고가 2013. 10. 1.경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D의 대표이사직 사임 시 원고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참조). 다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개별 대출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D 사이의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중 780,00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형태의 한정근보증계약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의 여신거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뿐이므로, 보증계약의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이상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설령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1) 피고는 이 사건 한정근보증의 주채무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서상 피보증채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D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한정근보증계약을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대출금채무 외에 피고가 원고와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할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정근보증의 주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